



보도 일시	<전매체> 12. 20(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	
담당 부서	벤처혁신정책관 벤처혁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대건 (044-204-7700)
		담당자	사무관 이상영 (044-204-7704)


도심지 벤처기업 입지난 해소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 벤처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벤처기업 집적시설 규제개선으로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높은 임대료 부담 완화 기대
- 벤처기업 집적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23년부터 37.5%에서 50%로 확대하는 정부안 국회로 제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교통, 정보, 금융 등 경영 여건이 좋은 도심 내 건물 입주가 가능한 벤처기업 범위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기업을 신기술 영위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벤처기업 등 첨단기업 유치에 위해 건축물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의 유인책(인센티브)을 부여하는 건축물이다.

기존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입주대상이었으나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 범위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기업으로 확대한다.

현재 (AS-IS)	향후 (TO-BE)
벤처기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기술의 개발·보급 현황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해 고사하는 업종이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창업보육센터 3년 입주 경력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과도한 입주업종 규제로 '18년 기준 96개소에서 '22.11월 기준 111개소가 지정(벤처기업 986개사 포함 2881개사 입주)돼 그간 신규 지정 수요 및 민간 참여 증가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반면, 유사 시설인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제조업의 입주도 허용되고 있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업종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규제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비교 국가의 경우에도 창업기업(스타트업) 집적시설에 대해서는 과도한 입주업종 규제 없이 민간 자율 유도 추세

이번 개정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에게는 규제완화에 따른 입지 선택권의 확대, 건설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성 강화 및 시행 위험(리스크) 완화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위임된 업종 및 산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당초 올해까지 일몰 예정이었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건은 3년 연장과 함께 감면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안으로 벤처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은 4,560개사로 매출총액이 전년대비 3,988억 증가했으며, 지난 3년간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종사자 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2020년 12월말 77,044명, 2021년 9월말 83,158명, 2022년 9월말 92,146명 (대덕 이노폴리스벤처협회 '22년 12월 조사결과)

이영 장관은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들은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여건 속에서도 전체 기업의 3배가 넘는 고용 증가율*로 경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며,

*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증가율(3.3%) 대비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은 약 3배(9.7%) 및 벤처투자 받은 기업은 약 12배(40.5%)의 고용증가율 기록('22.6월말 기준)

“우리 혁신기업들이 낡은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 받지 않고 도심지 내 저렴한 입지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벤처기업 집적시설 주요 내용

□ (개요) 교통, 정보, 금융 등 경영여건이 좋은 도심건물을 집적시설로 지정해 벤처기업 입주 지원 (1999년~)

- (지정권자) 광역지자체장 또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장
- (지정조건) ① 지정 후 1년 이내에 3~4개 이상 벤처기업 입주,
② 건축물 연면적(전용 600㎡ ↑) 50~70%이상 벤처, 지식, IT 기업 입주
- (인센티브)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23년말), 6개 부담금 면제, 국공유재산 등에 대한 수의계약/신탁 등 허용, 국토계획법 등 규제법령 적용제외, 미술장식 설치 의무 배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및 재산세(5배) 중과세율 적용 배제
 - 임대료 수준은 인근 사무실 임대료 대비 평균 68.2% 수준
- (지정현황) 전국 111개(수도권 63개, 57%) 2,881개사 입주(벤처 986개사)('22.11)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계
사설수	13	7	3	6	9	1	1	47	3	3	2	2	12	1	1	111
기업수	619	18	89	114	172	16	39	1094	69	93	83	36	407	5	27	2881
벤처수	148	10	23	48	67	7	3	427	43	28	36	8	127	3	8	986

- (지정성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기술성과 및 경영성장성에서 우수하게 나타났고, 지식산업센터*(산업부)는 경영 수익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하게 나타남(경북지역 입주기업 178개 분석결과, 중기연, '22.11)

*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및 입주나 해소를 위해 아파트형태의 입주공간을 제공

□ 유사제도(지식산업센터)와 비교

구분		벤처기업집적시설(중소벤처기업부)	지식산업센터(산업부)
설립·지정 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
승인·지정권자		시·도지사(법 18조 ①항)	시·군·구청장(법 28조의 2의 ②항)
사업개요		도심내 벤처기업의 입주공간 확보를 용이하도록 일정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집적시설로 지정하고 벤처기업을 집적시켜 그 영업활동을 활성화	영세한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및 입주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형태의 입주공간을 제공해 근로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창출 등으로 행복한 일자리 확대
지정요건 및 입주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요건 : 전용면적이 600㎡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물일부를 지정받는 경우는 각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영11조의8) ○ 입주기업 및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4개이상, 수도권역 외 3개 이상),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이 연면적의 70%이상 (수도권 외는 연면적의 50%이상) - 지원시설: 금융 등 지원기관, 공동 이용장비실, 전시실 등 업무활동 시설 및 체력단련실 등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요건 : 지상 3층 이상의 집합 건축물이고, 6개이상의 공장이 입주 할 수 있고, 지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이상일 것(영4조의 6) ○ 입주기업 및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 산업, 벤처기업 - 지원시설: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물류시설, 운동시설, 어린이집 등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등
지원내역	사업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6가지 부담금 면제 ○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및 임대 허용 ○ 국가·지자체는 집적시설의 시설·설치비용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50%면제 및 재산세 37.5% 감면 ○ 건설비의 75%이내 금융지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건립자금 건립비의 75% 이내 지원
	입주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입주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종과세 적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로 지식센터에 분양받은 입주자는 취득세 50%면제 및 재산세 37.5% 감면 ○ 양도세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2년 미만: 40% ○ 증부세 8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증부세 과세 제한
지정현황		전국 111개('22.11월 기준) 수도권 비중 60%(67개) 벤처기업 입주 34%	전국 1,235개('21년말 기준) 수도권 비중 81%(996개) 벤처기업 입주 5.7%

지역	벤처집적시설 외관	현황	
서울		중소기업DMC타워 (서울 마포구)	
		-준공 : 2012.06.22 -지정 : 2012.05.31 -면적 : (지정) 43,326㎡	-지자체 : 서울시 -사업자 : 중소기업DMC타워 -소유주 : 중소기업중앙회 -입주기업 : 74개사 -입주벤처 : 19개사
경기		판교이노밸리(6BL) (경기 성남시 분당구)	
		-준공 : 2011.03.29 -지정 : 2008.12.16 -면적 : (지정) 62,489㎡	-지자체 : 경기도 성남시 -사업자 : (주)이노밸리 -소유주 : (주)인알시스템 외 37개사 -입주기업 : 74개사 -입주벤처 : 19개사
대전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원 (대전 유성구)	
		-준공 : 1997.07.01 -지정 : 2000.04.27 -면적 : (지정) 2,631㎡	-지자체 : 대전시 -사업자 : 충남대학교 -소유주 : 충남대학교 -입주기업 : 37개사 -입주벤처 : 20개사
대구		SW융합테크비즈센터 (대구 수성구)	
		-준공 : 2019.03.21 -지정 : 2020.01.03 -면적 : (지정) 13,095㎡	-지자체 : 대구시 -사업자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소유주 : (주)포스코 -입주기업 : 35개사 -입주벤처 : 9개사
포항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 (경북 포항시 남구)	
		-준공 : 2021.06.28 -지정 : 2021.09.09. -면적 : (지정) 28,372㎡	-지자체 : 포항시 -사업자 : (주)포스코 -소유주 : (주)포스코 -입주기업 : 88개사 -입주벤처 : 40개사

참고3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주요 내용

- (개요)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
 - (지정권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지정조건) ① 해당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수가 중소기업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③ 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 (유인책(인센티브))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37.5% 감면 (~'22년말), 5개 부담금 면제, 미술장식 설치 의무 배제
 - 지구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37.5% 감면('22년말까지, 지특법, 제58조 제4항)
 - (지정현황) 전국 28개 지구, 4,560개 벤처기업 입주, 총매출액 22조7천억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5	2	1	1	1	1	2	5	2	1	1	1	1	2	1	1	-	28

- (지정성과) 벤처기업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경우 비입주기업에 비해 매출성장률이 약 8% 가량 유의하게 증가, 촉진지구 입주기업들의 특성 자체가 연구개발비 등 혁신성과를 더 추구하는 기업들이므로 조사됨 (경기도 2111개 기업 대상 분석결과, 중기연, '22.11)
 - 도심지 입지를 선호하는 벤처기업의 집적공간 역할을 수행해 소규모 신규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유입 확대

(단위: 개수)	'08	'10	'12	'16	'21
입주벤처기업 수	1,846	2,708	3,347	3,924	4,496
지구당 평균 벤처기업수	82.68	108.32	128.73	150.92	160.57